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984호

나. 발 의 자 : 유정희 의원(찬성자 14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9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논란의 여지를 사전방지 하고, 소장 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미술관 자료 구입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운영 및 미술관자료 구입·기증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미술관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6조, 제28조의2)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자문 등을 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 친족, 학연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미술관의 자료구입·기증과 관련하여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음.
-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시 직속기관·사업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 사유를 포함하여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미술의 본연의 가치가 각종 화랑과 대행사의 로비, 특정 작가와의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으로 왜곡·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해 4월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방안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라는 통보사항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술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을 위한 미술관자료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 자료 기증 시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

현행	개정안
	<p>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p>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p>
(생략)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p>⑤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진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p>
(생략)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p>⑥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p>

의안번호
98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유정희 의원	23.8.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 ○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 시 절차 위반 등 논란 발생. 작품 구입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술관 자료 구입에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조례에 규정</p> <p><주요 입법 요지> ○ 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안 제28조의2)</p> <p>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p>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p>				
추진경과	○ 2023.8.9.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제척·회피·기피) 규정(제1호~제4호)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에 제5호(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나 미술관 소장품 구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노은영(☎2133-4183)	담당	강주연(☎2133-4186)